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(허종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7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0. 29.

발 의 자 : 허종식 · 이훈기 · 이재관
김정호 · 안호영 · 유동수
허영 · 박정 · 노종면
한민수 · 서영석 · 김교홍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해상풍력·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·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(이하 “공동접속설비”라 함)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, 현행법은 발전사업자,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.

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원개발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공동접속설비의 원활한 건설을 통해 전력망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3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허종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 제13787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발전사업자·송전사업자”를 “발전사업자·송전사업자·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전원개발사업자) 전원개발 사업은 「전기사업법」 제7조 에 따라 허가를 받은 <u>발전사업 자·송전사업자</u> , 「방사성폐기 물 관리법」 제10조에 따른 방 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에 따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자(이하 “전원개발사업자”라 한 다)가 시행한다.	제3조(전원개발사업자) ----- ----- ----- <u>발전사업자</u> <u>· 송전사업자· 재생에너지공동</u> <u>접속설비건설사업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